

백두산은 백두산이다. 그런데 백두산은 서로 달리 부르는 이름이 많다. 이름이 많이 붙어 다닌다는 것은 그 나름의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름을 지어 부른 사람들은 제각기 제몫을 챙기려 들게 마련이다. 그와 같은 연유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이 바로 '백두산 유산 추진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백두산은 한반도(함경북도)와 만주와의 접경선을 이루고 있는 산으로 높이가 해발 2,744m에 달하는 명산이다. 일찍이 동방세계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는 신왕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영산(靈山)이라 부르기도 하는가 하면, 정상에 있는 호수를 우리는 천지(天池)라고 부른다.

물론 고려시대에는 달문담(달문담)이라 하여 멀리 흘러간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를 용왕담(龍王潭)이라 부르면서 신비성을 느끼려 했다.

산의 이름 자체도 남북조시대에는 태백산(太白山) 또는 도태백(徒太白)이라 부르다가 금(金)나라 때에 이르러서 백산(白山) 혹은 장백산(長白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후 개념으로 본다면 장백산이라는 것은 백색이 덮혀서 늘 희게 보인다는 뜻이며, 백두산은 산의 정상인 머리 부분만 희다는 뜻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불자 세상보기

김유혁
前 금강대학교 총장

백두산 탐내는 중국

것은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도주제선(道州制線)은 전통적으로 산의 능선과 물줄기를 따라서 접경선을 확정했다는 점이다. 이를 의산격수(依山隔水) 방식이라 한다.

요즈음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유네스코의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조약'에 따라 등록을 서둘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별된다. 20여개국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중국군의 요구에 따라 접수 조사 심사의 과정을 밟게 된다. 중국의 요구가 접수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위원회의 소정절차는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의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유네스코는 UN산하의 기관이다. 한국도 중국도 북한도 모두가 원칙적으로 동등한 유네스코원국이다. 그러나 백두산은 중국과 북한과의 접경선을 이루고 있는 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냉정히 살핀다면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라는 논리를 바로 세워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돌이켜보면 1712년(숙종38년)에 백두산에는

특별기고

다시 찾아야 할 우리땅 북간도

이두(조계종 원로의원 · 금오문화재단 이사장)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행체, 반박반박 정답게 지내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만 뜰에서 눈물 흘린다.

-소과 방정환의 '별삼행체'

이 풍요에는 당시 민족의 슬픔이 그대로 들어 있다. 조선을 남산(南鮮), 북산(北鮮)으로 나누어 말하던 습어(習語)가 있었고 간도(間島)에 다수의 동포가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별 삼행체'라고 했다. '날 저무는 하늘'은 그 때 조국의 상황과 운명을 말한 것이다.

일제 조선척식회사와 금융조합에 토지를 약탈당하고 굶주림에 떨면서 남부여대(南婦女戴)하고 살 땅을 찾아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가 정착한곳이 바로 북간도. 지금의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이다.

한국과 중국은 간도를 놓고 서로 자기의 영토라고 하는 국경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 세종 때 김충서 장군은 그 땅에 6진을 세우고 조공까지 받았다. 1600년 청나라 건국과 함께 여진족들이 중국본토로 이전하자 청나라는 이곳을 봉금지(封禁地)로 정하고 한민족의 유입을 금하였으나 한인들은 내 땅으로 알고 찾아들어 청인들과 충돌이 잦았다. 이렇게 되자 중국은 불투명한 국경관계를 조사하여 1712년(숙종38년)에 목극등을 파견하여 우리 측의 박권과 국경회담을 한 결과 백두산 산정 정계비(定界碑)를 세웠는데 때문에 "서쪽으로 압록, 동쪽으로 토문"이 있으니 그 분수령위에 비를 세운다"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연변일대가 한국에 속하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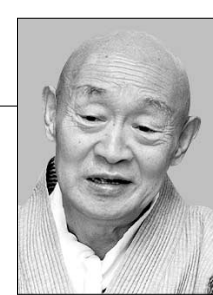
이상을 넘는 광역이다. 그러나 청 말기에 중국은 토문강은 두만강을 지칭한 것이라 우겨 다시 국경논쟁이 치열해졌다. 1894-5년의 청일전쟁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1900년 청국의 약세를 틈타 러시아가 간도를 점령했다.

정부에서는 1902년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에 파견하여 주민을 위무하게 하고 이듬해에는 그를 북간도 관리사(北間島 管理使)로 임명하여 이를 주한청국공사에게 통고하는 한편 여기에 포병을 양성하고 조세를 증수하며 간도의 영유권을 계속 관철해 나갔다.

청·일간 맺은 '간도협약'은 무효

그러나 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에 따라 간도문제는 청일간의 현안으로 넘어가고 일본은 1907년 간도에 통감부 출장소를 개설한다.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통감부 출장소 시설의 일본의 구실이었다. 전혀 중국은 간도에 간섭하지 못하였는데 일본이 러·일 전쟁 후 러시아에서 얻은 탄광 철도등 만주에 있어서의 이권문제가 엇갈리게 되자 양국협상을 통해 "청국은 일본이 간도가 청국영토임을 인정하면 만주에 있는 일본의 이권에 대해 양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909년 9월4일 한국영토인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청일협약을 체결했다.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이 협약에 따라 통감부



간도출장소는 폐쇄되었으나 일본 총영사관으로 대체됨으로써 간도에 있어 일본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을 억압하고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더욱 집중화할 수 있는 효과까지 얻었다.

1909년 당시 간도지방 주민조사로 나타난 한국인은 8만2천9백여 명.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정계비를 무시하고 압록강 이남으로 한국영토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힘이 없다 보니가 우리 땅을 남들이 멋대로 농락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만주에서도 간도는 특히 우리민족의 대일항쟁의 근거지로서 이름이 드높았다.

간도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영유권 분쟁을 겪다가 1909년 한국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과 중국이 체결한 간도협정에 따라 중국의 영토가 되었으나 일본 식민지에 체결한 조약 모두 무효로 한다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에 의거해 한국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땅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당시 간도는 소련군이 점령한 상태였고 중국은 중국군과 공산군의 내장싸움이 계속됐고 북한은 정부가 형성되기 이전이었다. 이러한 때 1948년 2월 소련 중공 북한이 체결한 평양문서가 나타났다. 이것에 따르면 동북지방의 일부를 3개 한인 자치구로 확정하고 장차 한국에 귀속 시킨다고 했다. 이러한 시기에 6·25가 터진 것이다. 인민

정계비(定界碑)가 세워졌다. 당시의 중국을 대표한 사람은 길림성 성장이었던 목극등(穆克登)이었다. 숙종조에서는 박권(朴權)을 접판사(接伴使)로 파견했다. 그 때 정계비는 압록강과 두만강 분수령 산마루에서 동남방 4km지점(해발 2200m)에 세워진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다. 엄밀히 따진다면 이는 국경선의 획정이라기에는 너무나 설득력이 없다.

하여튼 한중국경선은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여 서쪽으로는 압록강의 물줄기를, 동쪽으로는 두만강의 유로를 국경선으로 인식해왔다. 그렇다면 백두산은 한국과 중국이 반쪽씩 나누어서 소유한 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은 남백두산과 북백두산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한국에서 백두산 문제를 제기하면 한국 백두산이 될 것이고, 중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의 백두산이 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단일 산명의 개념으로 유네스코에 자연유산 등록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에 바라건대, 1712년에 정계비를 세우고자 했을 때 국제간의 예의를 존중했던 그 당시의 겸양이라도 최소한 표제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일이 동북공정 개념의 것이 아니라 아아 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군의 전진이 대구를 조금 남겨두고 부산을 앞선 포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백두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이 탈환되고 부산을 포위했던 인민군이 총퇴각하게 됐다.

이때 김일성은 갈 길이 막막해지자 압록강과 두만강이 갈라지는 곳 병오리에 집을 꾸는데 중공지도자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확언을 하고 돌아갔다. 그 후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한국과 유엔군은 총퇴각하고 서울로 후퇴, 공산군이 평택까지 오고 인민군 정찰대가 천안까지 밀려왔다고 하니 그때부터 휴전될 때까지는 말로 옮길 수 없는 파란을 겪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 정권이 그 후, 어떤 이유로 간도 땅을 중국에 양보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과 중공은 1962년 비밀리에 국경협정을 체결했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에 개인적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마침 중국에 가는 인연이 닿았다. 그때는 중국과 우리나라는 아직 국교가 정상화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홍콩에서 비자를 받아 간도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니 간도가 중국에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간도를 중국에 넘긴 이유에 대해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 6·25때 도와주었다는 이유부터 김일성이 중국을 뜻있게 돕기 위해 간도를 바쳤다는 등 중국이 마다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져간 것이라고... 김일성이 간도에 있는 동포를 생각한다면, 또 그 땅을 사랑한다면 죽어도 우리 땅을 달라고 빌었으면 간도는 그대로 우리 땅이 될 수 있었다고 당시 분해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 첫째는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일. 둘째는 청일간의 간도협약을 해소시켜 우리 영토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일이다. 다소 경제적 부담을 안고라도 그것을 성취해야만 부끄러운 선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간도땅을 찾아야 한다.

불자의 눈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최근 246개 광역기초단체장들에게 종교중립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위원회는 서신에서 "사회 공직자의 종교 편향은 부하직원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속한 조직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한다. 또한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든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직자의 종교편향이 왜 문제되는지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적시한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종교 분리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즉 공직자는 공적인 자리나 공적인 행정집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자질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열사봉공의 정신, 즉 사적으로는 거마까지 허용하나 공적으로는 침하나도 용납지 않는 '사통거마 공불용침(私通車馬 公不用針)'의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교에 대한 중립적 입장도 공익과 사익을 잘 분간하는

공직자의 종교중립 의식

일종의 공직윤리에 다름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보여준 종교편향의 작태는 개인적 신뢰와 그 사람의 종교에 대한 호감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심각한 우려를 안겨 주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직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위원회가 21일까지 회신해 줄 것과 실명공개를 언급한 만큼 과연 246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우리 불교계가 이러한 자질부족의 공직자들에 대한 대응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교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들을 불교행사자리에 버젓이 앉히는 따위의 우리 교단의 지나친 자비(?)의 행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진정 참회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단지 정치적 이유로 잠시 불교계를 회유하고 있을 뿐이라면 단호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것은 종교편향발언에 이어 불교계를 또 한번 농락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단인 사들의 각성과 단합을 아울러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수영법도량 학주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돈벌이에 치중하고 명예를 구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읽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공 고
1. 재단법인 대한불교원효종은 1997. 12. 20. 비법인사단인 대한불교 원효종 개정중헌이 무효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99가합16739호판결)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재심이 여의치 않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카합31호 결정에 의하여 위 대한불교원효종 중정과 중회의장 김삼조는 그 직함을 사용 못하게 되었고 위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송기욱도 그 직함을 사용 못하게 되었을 때에 위 대한불교원효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주시 배동 산65번지의 소재 망월사와 그 부지인 임야와 밭 등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 개정중헌에 의하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이었던 위 송기욱이 2004. 3. 29. 위 망월사를 재단법인 대한불교 원효종에 증여하여서 2004. 4. 21. 위 대한불교원효종산하법인으로 동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동 재단법인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법인사단인 대한불교원효종은 2005. 11. 10. 경 전시한 1997. 12. 20. 개정중헌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중정 선임신청을 하여 동년 12. 14. 임시중정으로 김 대관을 선임받아서 현재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원효종 존재 자체에 의문이 발생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2. 어떠한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이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서 위 재단법인 정관 어느 조항에도 승려증을 발급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승려증 발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위 재단법인소속 상급단체인 위 대한불교 원효종 승려에 대한 승려증을 심지어 돈까지 받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3.비법인사단인 대한불교원효종 중도(승려)들께서는 이치에 닿지도 않은 말에 현혹되어 법률상 비법인사단인 대한불교 원효종 승려증으로서서는 무효인 재단법인 대한불교원효종 명의의 승려증을, 비법인사단 대한불교원효종 승려증으로 착각하고 발급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06. 8. 8.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중정 김 대관
(자세한 것은 종단 사무처에 전화(02)735-05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